

4. 교육훈련사업

가. 2007 교육훈련사업 개요

*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기술기획과(농촌지도사 유소나, 031-229-5857)입니다.

영농현장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신지식·기술·경영능력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농업인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체 육성

□ 기본방향

- 농업인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계획 수립
- 중앙, 도, 시군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
-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추진
-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 추진하여 교육성과 제고

□ 중점 추진방안

- 지역여건과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농업인 교육계획을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
 - 새해영농설계교육, 품목별 상설교육 등 세부사업별로 지원하던 교육관련 예산을 농업인전문교육으로 통합하여 지원
 -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인의 요구를 근거로 세부사업별 농업인 교육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
 -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대학을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추진
 -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심화교육 과정에 중앙의 예산, 콘텐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성과 제고

- 중앙, 도, 시군단위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
 - 도에서는 농업교육협력체 운영을 활성화
 - 권역별 지역특화품목 중심으로 농업인단체, 농과계 대학, 산업체와 협력하여 전문교육 운영
 - 전문 강사 등 시군의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 기능 강화
 - 시군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애로기술 해소와 유통교육 강화
 - 새해영농설계교육, 당면과제 현장교육, 농기계 교육 등 현장애로 기술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
 - 모든 교육과정에 유통교육을 병행하여 농가경영능력 향상
 - 권역별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중장기 심화교육 과정 운영 확대
- 모든 교육을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
 - 농업인의 의견과 교육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교육계획에 반영
 - 사전에 농업인단체, 품목별농업인 등의 의견조사 결과 활용
 - 다수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기술과 관심분야가 동일한 농업인을 가급적 소그룹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교육 전개
 - 농업인의 고급 전문기술 수요에 부응하여 심화교육을 위한 중장기 농업대학과정 운영을 확대
 - 자체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
- 농업인단체 등 농업인 교육 수행 주체들과 협력강화
 - 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에 강사, 교육인프라, 교육교재 콘텐츠 등을 지원하고 단체는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역할 분담
 - 성공한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전문가를 사례발표 등 강사로 활용
 - 농업인단체, 대학교수 등으로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구성하여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, 평가 등을 협력하여 추진

□ 세부 추진계획

- 농업인 교육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추진
 - 새해영농설계교육, 품목별 상설교육,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, 농업인 수출 품목교육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
 - 친환경농업교육, 우수농산물(GAP) 품질관리 교육 등 국가 정책에 따른 교육은 농업인 수요를 감안하여 교육과정 운영

-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자체 농업인교육도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인 전문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추진
- 교육계획 수립단계에서 농업인단체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

○ 농업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

<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>

- 새해영농설계교육의 영농기술 분야 및 농촌생활자원 교육
- 시군별 특화품목조직 농업인 연중교육
- 품목별 주요 영농시기별 교육

<유통 및 전산 전문교육>

- 농산물가공교육장비가 설치된 시군의 농산물 가공교육
- 경영유통, 가공, 전자상거래 등 농산물 유통 종합교육
- 전산교육이 가능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교육

<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>

-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체계적인 심화 전문교육

<농업인 수출품목 교육>

- 지역별로 핵심 수출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

<지역특화 소득품목 전문교육>

- 지역특화 소득품목 육성을 위한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전문교육

<당면과제 현장교육>

-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당면과제 및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도과정에서 추진하는 수시 교육

<우수농산물관리(GAP) 관련 농업인 교육>

-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실시요령 및 관리기준에 대한 교육
- 농약·비료 사용 요령 등 안전농산물 생산관리 교육
- 농산물생산이력추적관리제도, 수확후 위생관리 요령 교육

<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육성>

- 도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지역별로 시군농업기술센터, 농협, 산업체, 대학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

○ 농업인교육 추진내용

- 교육시기 : 연중(교육과정별 교육시기 및 기간 등을 별도 지정)
- 교육장소 : 시군농업기술센터, 농장 등 교육방법에 따라 결정
- 교육내용 : 교육과정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교과 편성
- 교육방법 : 교육내용에 따라 강의, 토의, 실기실습, 사이버교육, 사례발표, 비교견학 등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
- 교육평가 : 교육 참여자 및 교수평가를 실시하여 차후 교육운영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

□ 농업인교육 결과 평가 및 활용

○ 농업인교육 추진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

- 농업인교육 연간계획에 따른 결과 평가를 시군단위로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음 교육계획에 반영

○ 농업인교육 추진 평가결과 활용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교육결과 및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하여 교육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
- 전문교육 수료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후관리

□ 연간 교육인원

○ 2007 농촌진흥공무원교육 계획

구 분		교육기간	횟수	교육인원	교육시기	비고	
분야별	과정명						
합 계 (50과정)		3일~5주	56회	2,617명			
전 문 교 육	계 (46과정)	1주~5주	48회	2,111명	2월 ~ 11월		
	소 계 (14과정)	1~2주	14회	660명	-		
	농 업 기 술	1. 고품질쌀생산	1	1	51	3.5 ~ 3.9	
		2. 친환경농업	1	1	76	3.19 ~ 3.23	
		3. 병해충진단및종합관리	1	1	75	3.12 ~ 3.16	
		4. 인삼·약초	1	1	48	6.11 ~ 6.15	
		5. 잡초방제종합	1	1	30	3.12 ~ 3.16	
		6. 토마토	1	1	27	6.25 ~ 6.29	
		7. 분화	1	1	32	5.28 ~ 6.1	
		8. 시설과수재배	1	1	26	5.28 ~ 6.1	
		9. 원예치료	2	1	77	6.4 ~ 6.15	
		10. 양봉	1	1	37	10.22 ~ 10.26	
		11. 번식기술	1	1	10	6.18 ~ 6.22	
		12. 전문농기계	1	1	41	4.9 ~ 4.13	
		13. 웰빙작물	1	1	47	4.9 ~ 4.13	
		14. 유용미생물(EM)	2	1	83	3.19 ~ 3.30	
	기 능 · 소 양	소 계 (25과정)	1~4주	27회	1,235명		
		15. 생명공학기초연구	1	1	25	4.16 ~ 4.20	
		16. 작물육종연구	1	1	29	10.8 ~ 10.12	
		17. 식물생리	1	1	58	9.3 ~ 9.7	
		18. 통계분석	1	1	58	10.15 ~ 10.19	
19. 농업연구사기초		1	1	32	9.17 ~ 9.21		
20. 농촌지도기초		4	3	149	3.12 ~ 4.6 4.9 ~ 5.4 6.4 ~ 6.29		
21. 농가경영컨설팅	1	1	27	9.17 ~ 9.21			

분야별	구 분		교육기간	횟수	교인 육원	교육시기	비고
	과	정 명					
전 문 교 육	기 능 · 소 양	22. e - 비즈니스	1	1	38	10.29 ~ 11. 2	
		23. 북 한 농 업	1	1	30	9.10 ~ 9.14	
		24. 교육프로그램개발	1	1	20	10.22 ~ 10.26	
		25. 지 적 재 산 법 령	1	1	30	10. 8 ~ 10.12	
		26. 우수농산물품질관리	2	1	73	5.14 ~ 5.25	
		27. 강 의 기 법	1	1	36	10.29 ~ 11. 2	
		28. 실 내 조 경	1	1	61	7. 2 ~ 7. 6	
		29. 중 견 식 물 보 호	2	1	83	8.20 ~ 8.31	
		30. 중 견 종 자 관 리	2	1	76	4.30 ~ 5.11	
		31. 중 견 시 설 원 예	2	1	24	2. 5 ~ 2.16	
		32. 중 견 농 업 기 계	2	1	34	7. 9 ~ 7.20	
		33. 중견토양평가관리	2	1	26	8.20 ~ 8.31	
		34. 종 자 전 문 가	2	1	63	5.14 ~ 5.25	
		35. 축 산 전 문 가	2	1	24	5.14 ~ 5.25	
		36. 농 화 학 전 문 가	2	1	61	7. 9 ~ 7.20	
		37. 화 훼 장 식	2	1	32	6.25 ~ 7. 6	
		38. 유 기 농 업	2	1	89	7. 2 ~ 7.13	
		39. 농 촌 조 경 설 계	2	1	57	8.20 ~ 8.31	
			소 계 (5과정)	1주	5회	157명	
	생활 과학	40. 농 촌 관 광	1	1	38	5. 7 ~ 5.11	
		41. 소 비 자 농 업	1	1	25	9.10 ~ 9.14	
		42. 과 일 가 공 기 술	1	1	32	9. 3 ~ 9. 7	
		43. 농 촌 마 을 관 련 법	1	1	33	10.15 ~ 10.19	
		44. 농 촌 활 력 화 사 업 실 무	1	1	29	3. 5 ~ 3. 9	
	장기 교육	소 계 (2과정)	4주~5주	2회	59명		
		45. 장 기 전 문	5	1	9	3. 5 ~ 4. 6	
		46. 상 시 학 습	4	1	50	3. 5(등록)~ 11. 2	
	기 타	특 별 교 육 (4 과 정)	3일~1주	8회	506명		
		47. 기 획 담 당 자 혁 신	1	2	82	3.26 ~ 3.30 4. 2 ~ 4. 6	
		48. 핵 심 관 리 자	1	1	24	4.23 ~ 4.27	
		49. 새 기 술 실 용 화	3일	1	200	추후결정	
		50. G A P 인 증 요 원	1	4	200	”	

○ 2007 농업인 교육훈련 계획총괄

(단위 : 명)

구분	과 정 별	기 간	계 획	대 상
중 양	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	2~5일	848	교육희망농업인
	신규농 직업훈련과정	3월	20	귀농창업 희망농
	도시민 전원농업 교육	3일~3월	80	은퇴, 귀농자 등
	농축산물 수출·유통공개강좌	2일	1,000	주산지역 희망농업인
	농기계정비기능사 양성 교육	2주	80	교육희망농업인
	농기계산업기사 양성 교육	2주	40	희망농업인 및 수리요원 등
	농기계 정비기능사 종합 정비실기교육	2일	40	기능사양성교육이수자
	농기계 산업기사 종합 정비실기교육	2일	40	산업기사양성교육이수자
	농기계 실기능력 배양교육	2일~1주	520	한농전 및 농과계대학생
농촌여성 대표지도자교육	2일	200	생활개선회장단	
도	지역농업교육협력체사업	-	위탁추진	교육희망 농업인
	지역특화소득품목 교육	1~2일	"	교육희망 농업인
	전문 농업정보 교육	2~3일	"	정보화교육 희망 농업인
	기계화영농사교육	2주	80	기계화영농 희망 농업인
	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	4일	20	지역사회 리더
	애그로-세르파 아카데미	3~5일	100	도시민, 여성이민자, 희망농업인
시 군	새해영농설계교육	1일	43,310	교육참여 희망농업인
	품목별 상설교육	1일	12,345	품목별 희망농업인
	전문농업인육성	자율추진	15,620	영농교육 희망자
	농업인 수출품목 교육	자율추진	300	수출품목 교육희망자
	GAP 등 당면과제 현장교육	1~2일	2,884	교육희망 농업인
	농업인 정보화 교육	자율추진	1,398	정보화교육 희망농업인
	소비자 및 가정원예 교육	자율추진	8,240	도시민 및 여성농업인
	농업인대학 및 기타영농교육	자율추진	3,030	교육참여 희망농업인
	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	1일	자율추진	농업기계 수리교육 희망자
	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	1~2일	1,796	실수요농업인 및 부녀자
	농업기계 교통안전운행 교육	-	자율추진	도로 주행형기종 보유농가
소 계			91,991	

□ 근거법령

<공무원교육 법규>

-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
-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
- 농촌진흥법 제2조 3항
 -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
- 행정자치부 교육훈련세부지침(행정자치부 교훈12135-28, '99. 10. 14)

<농업인교육 법규>

- 농촌진흥법제2조3항 및 동법시행령,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1조2항, 64조5항
-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

□ 행정사항

- 각 도농업기술원 및 특·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앙의 교육훈련과정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
- 2007년 농업인교육훈련 과정별 추진상황(금회/누계)을 중간보고 '07. 6. 25일, 최종보고 '07. 12. 25일까지 농업기술원(기술기획과)에 보고